#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 재판지원 계속성에 관한 2010년 2월 16일 데크레 제2010-149호

(D?cret n°2010-149 du 16 f?vrier 2010 relatif ? la continuit? de l'aide juridictionnelle en cas d'examen de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 par le Conseil d'Etat, la Cour de cassation et le Conseil constitutionnel)

제1조

1991년 12월 19일 데크레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53-1조를 삽입한다 :
최고행정법원, 파기원 혹은 헌법재판소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처리할 때 재판지원대상자는 그대로 혜택을 받는다.

필요하다면, 재판지원 혜택자의 제소를 받은 법률구조국장 또는 법률구조국 부서의 요구에 따라, 최고행정법원과 파기원의 변호사회의 장은 국사원과 파기원 각 기관에 속하는 변호사 한 명을 지명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90-1조를 삽입한다 :
다른 모든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받은 경우, 재판지원의 상이한 업무에 적용되는 계산법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는 16등급이 가산된다.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93-1조를 삽입한다 :
최고행정법원 또는 파기원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받는 경우, 최고행정법원 또는 파기원에 속한 변호사에게 국가가 지불하는 보수는 191유로로 한다. 이 금액은 상기업무가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는 경우 382유로로 인상된다.

제2조

1991년 12월 30일 데크레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 2-2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7-19조를 추가한다 :

a) 법률보호조항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재판지원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에 관한 2008년 12월 15일 데크레 제2008-1324호가 적용된다.

b) 최고행정법원, 파기원 및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지원 계속성에 관한 2010년 2월 16일 데크레 제2010-149호에서 작성된 1991년 12월 19일 데크레 제53-1조, 제90-1조, 제93-1조가 적용된다.

2° 상기 데크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9-1조를 추가한다 :

제19-1조

헌법 제61-1조의 시행에 관한 2009년 12월 10일 조직법률 제2009-1523호의 적용을 위해 규정된 b)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17-19조의 규정들은 최고행정법원의 데크레로 개정될 수 있다.

제3조

1996년 4월 2일 데크레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9-1조를 삽입한다 :

최고행정법원, 파기원 혹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수행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1991년 12월 19일 데크레의 규정, 특히 제53-1조와 제93-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54-1조를 삽입한다 :

제54조에 규정된 표로 계산하는 재판지원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제청 받은 경우, 제54조에서 규정된 계산표를 적용하여 소송구조 업무를 위해 지급되는 보수는 16등급이 가산된다.

제4조

1993년 12월 31일 데크레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2-1조를 삽입한다 :

제22-1조

최고행정법원, 파기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검토를 할 경우, 재판지원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 제91-647호의 시행에 관한 1991년 12월 19일 데크레 제91-1266호의 규정들, 특히 제53-1조와 제93-1조가 적용된다.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9-1조를 삽입한다 :

제39-1조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이 검토될 경우 제39조에 규정된 표로 계산하는 재판지원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16등급이 가산된다.

제5조

본 데크레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6조

본 데크레는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공포되며, 본 데크레의 집행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수상,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기획예산재정부장관이 책임을 진다.